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0.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10.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 기 석

가. 개정이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신공덕동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도화동 1의276번지부터 1의291번지, 1의354번지부터 1의376번지, 1의506번지부터 1의508번지, 1의391번지부터 1의396번지까지 총 47필지를 신공덕동에 편입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에 준공예정인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신공덕동, 도화동)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역표5)를 신설하여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에 있는 도화동 1의276번지외 46필지 2,530.9㎡를 신공덕동에 편입하고자함.

<검토의견>

○ 본 건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하나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49-3번지, 도화동 1-277번지 일대로 사업시행면적은 15,190.9㎡(신공덕동 12,660㎡, 도화동 2,530.9㎡)이고, 아파트는 3개동에 290세대가 되겠으며 해당

주민들의 총회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